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7의3] <신설 2014.2.21>

## 안전관리수준평가에 따른 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·평가 주기

(제27조의4제5항 관련)

1.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안전관리수준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·평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(이하 "주기"라 한다)은 다음과 같다.

| 평가등급 | 정기검사 주기 | 안전관리규정 확인·평가 주기 |
|---|---|---|
| 우수 | 3년 | 3년 |
| 양호 | 2년 | 2년 |
| 보통 | 1년 | 1년 |
| 미흡 | 6개월 | 6개월 |

2. 위 표에서 우수, 양호, 보통 및 미흡은 별표 7의2제4호가목에 따른 평가 등급을 말한다.